



제1631호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6 5 1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문 화 관 광 과 2
○ 공	고 제 1 6 6 0 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노 인 장 애 인 과 5
○ 공	고 제 1 6 7 0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12
○ 공	고 제 1 6 7 1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청 소 행 정 과 16
○ 공	고 제 1 6 7 2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30
○ 공	고 제 1 6 7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32
○ 공	고 제 1 6 7 9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문 화 관 광 과 36
○ 공	고 제 1 6 8 0 호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총 무 과 39
○ 공	고 제 1 6 8 1 호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 화 관 광 과 45
○ 공	고 제 1 6 8 2 호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여 성 가 족 과 54
○ 공	고 제 1 6 8 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산동 소로2-360호선, 소로 2-3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64
○ 공	고 제 1 6 9 1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청 소 행 정 과 74
○ 공	고 제 1 6 9 3 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도룡농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 <21수용0198>)	공 원 녹 지 과 81
○ 공	고 제 1 6 9 6 호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토 지 정 보 과 82
○ 보 건 소 공 고 제 8 2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식 품 위 생 과 86
○ 보 건 소 공 고 제 8 3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87
○ 보 건 소 공 고 제 8 4 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89

고 시

○ 고	시 제 1 4 1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93
○ 고	시 제 1 4 5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송이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96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5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를 대표자 주소 또는 사무소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21. 8. 20. (금) ~ 2021. 9. 4. (토)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상호	업종	대표자	소재지(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청문일시
(주)지에스 에듀	국외여행업	진*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26번길 **, *동 ***호 (구 월동)	휴업폐업신고 미이행(2차)	등록취소	2021. 8. 31.(화) 09:00~18:00
그라운드 유아 스포츠클럽	기타유원시설업	소*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층 (간석동)	휴업폐업신고 미이행(3차)	영업소 폐쇄	2021. 8. 31.(화) 09:00~18:00

4. 행정처분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5. 청문장소 및 의견제출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6층 문화관광과(만수동, 남동구청)
- 담 당 자 : 박호형(☎032-453-2143, FAX: 032-453-2139)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오.

※ 만일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60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1. 폐지이유**

- 본 규칙은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해당하는 내용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
(제정 2003.7.18. 규칙 제 591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251, FAX 453-58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본 규칙은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해당하는 내용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준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제정 2003.7.18. 규칙 제 591호)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남동구 규칙 제1014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70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8.23.~ 2021.9.6.**
3. 공고대상 : **이륜차 8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309	 2021. 6. 10. 오후 11:38:09 47-3 만수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10. ○ 견인일 : 2021.7.5.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643-6
	2021-00314	 2021. 6. 14. 오후 4:28:02 1043 만수6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14. ○ 견인일 : 2021.7.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장승남로33번길 21 대동아파트 대동9차아파트 지하주차장
	2021-00319	 2021. 6. 16. 오후 9:38:14 234 구월1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16. ○ 견인일 : 2021.7.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성리로 32-2 성리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인도
	2021-00321	 2021. 6. 17일 수요일 09:58:19 5-41 5 만수2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17. ○ 견인일 : 2021.7.15.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24-1 정각지구대
	2021-00331	 2021. 6. 22. 오후 2:55:57 902-7 만수6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22. ○ 견인일 : 2021.7.2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만수동 902-7 담장

관
리
번
호

2021-0033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25.
- 견인일 : 2021.7.2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6 간판집과
중고집 사잇길 울타리 전봇대

2021-0033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25.
- 견인일 : 2021.7.2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1210-13

2021-0034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25.
- 견인일 : 2021.7.2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40
예성아이라이프 대각선 맞은편 인도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1-0030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643-6	2021.7.5.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1-0031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장승남로33번길 21 대동아파트 대동9차아파트 지하주차장	2021.7.9.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1-003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성리로 32-2 성리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인도	2021.7.9.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1-0032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24-1 정각지구대	2021.7.15. 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1-0033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만수동 902-7 담장	2021.7.23.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6	2021-0033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6 간판집과 중고집 사이길 울타리 전봇대	2021.7.23.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7	2021-0033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1210-13	2021.7.23.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1-0034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40 예성아이라이프 대각선 맞은편 인도	2021.7.23.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71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12.25.)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조례 내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 통일

2.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정비
- 재활용가능품, 재활용품,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통일하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62 FAX 453-2559

4. 참고사항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12.25.)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과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제1항의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의 통일성을 위하여 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고 조례 내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코자 함.

☐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정비 : 별표 2 개정
 - 투명 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을 세분하고 배출요령 추가
- 재활용가능품, 재활용품,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통일하여 정비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별표 1
-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을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및 제9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가지런히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노트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하고 말린 후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상자류 (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2.병류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 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 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 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 농약병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캔류	○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수, 통조림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노즐을 눌러 배출 하거나 통에 구멍 뚫기)한 후 배출
4.금속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5.플라스틱류	○ 무색 투명 PET병 (생수, 음료수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일회용 비닐류 (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과자봉지, 라면봉지, 카피봉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 질을 제거하여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장판 제외
6.의류	○ 면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 의류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7.농업용 폐비닐류	○ 농업용 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8.폐건전지류	○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9.폐형광등류	○ 폐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10.스티로폼류	○ 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에 배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 ----- -----.
제8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8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u>재활용가능품</u> 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u>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u>	② ----- ----- --, <u>재활용가능자원</u> ----- -----, <u>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u> ----- -----.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재활용가능폐기물</u> 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4. <u>재활용가능자원</u> ----- ----- -----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또는 종량제 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 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u>재활용가능폐기물</u>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 ----- ----- ----- ----- ----- ----- ----- ----- ----- <u>재활용가능자원</u> ----- -----.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u>재활용품</u> 수거비용,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1. <u>재활용가능자원</u> ----- ----- -----

[참고자료]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빈틈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 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I)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폐지, 종이팩 구분)
2. 병 류
3. 캔 류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의 류
7. 농업용 폐비닐
8. 폐건전지
9. 폐형광등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72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8.23. ~ 2021.9.6.
3. 공 고 대 상 : 73구3083 외 6대
4. 공 고 내 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1-00250	73구3083	그랜드 카니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2-1 이화아파트 옆	(주)에이엠텍 강해운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27번길 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87번길23,3101동 806호(구월동,구월힐스테이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02번길14-6(구월동)	2021.6.25.~7.9. 2021.7.15.~7.29.	2021.7.7. 반송배달 2021.7.27.반송배달	2021.6.17.	(주)인천페차사업소	032-814-7077	
2	2021-00279	49조6261	K5	남동구 간석동 581-8	정상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108동 1803호(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021.7.8.~7.22. 2021.7.28.~8.11.	2021.7.13.본인 배달	2021.7.1.	(주)인천페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284	92저5385	봉고 III 1톤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유승테라폴리스 지하2층 주차장	폐기물공동수거운영기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121 (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340번길7	2021.7.8.~7.22. 2021.7.28.~8.11.	2021.7.15.수취인불명 2021.7.1.수취인불명	2021.7.2.	(주)인천페차사업소	032-814-7077	
4	2021-00293	01로6942	에쿠스 (EQUUS)	남동구 남동서로 291	케이투익스프레스(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67 (공향동)	2021.7.8.~7.22. 2021.7.28.~8.11.	2021.7.19. 이사불명	2021.6.30.	(주)인천페차사업소	032-814-7077	
5	2021-00294	18버4829	다이하츠미라코코아	남동구 호구포로 803, 2300단지 B2 가-12 주차구역	문승일(거주불명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2307동 402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2021.7.8.~7.22. 2021.7.28.~8.11.	2021.7.20. 기타	2021.7.1.	(주)인천페차사업소	032-814-7077	
6	2021-00299	04루6423	모닝	서창NH12단지 내 주차장 제1지하주차장 1204동 12번기둥	주인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68-7(한남동)	2021.7.8.~7.22. 2021.7.28.~8.11.	2021.7.21. 기타 2021.8.11.기타	2021.7.2.	(주)인천페차사업소	032-814-7077	
7	2021-00300	64오5087	비스토	서창NH12단지 내 주차장 제2지하주차장 1212동 12번기둥	(주) 누리통상 김준우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1번길 24,2층 203호(항동1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제로117번길22,110동 205호(동춘동,대우3차아파트)	2021.7.8.~7.22. 2021.7.28.~8.11.	2021.7.15.수취인불명 2021.7.1.수취인불명	2021.7.2.	(주)인천페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설치위치)을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의 대상(1개 학교, 1개소)

연번	학교명	설치위치	수량	장비	설치시기	비고
1	상아초등학교	통학로	1	다기능	2021. 8.~9.	
합계	1개 학교		1			

※ 사업 위치도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8. 23. ~ 2021. 9. 12.(20일간)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1. 8. 23. ~ 2021. 9. 12.(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8 / FAX : 032)453-289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붙임 1】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도

1. 상아초등학교 일원(당초)



2. 상아초등학교 일원(변경)



※ 화살표는 차량 주행방향임.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e-mail
- 보유·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까지
- 동의의 거부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접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79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상당 기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7일 내 폐업신고 미 이행
3. 공고기간 : 2021. 8. 24.(수) ~ 2021. 9. 13.(월) (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1. 9. 14.(화)
5. 직권말소 예고 대상 업소

대표자	업소명	업소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원인	직권말소 예정일
문 * 학	클로버 PC방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3, 601호 (논현동)	직권말소	영업폐지일부터 7일 내 폐업신고 미 이행	2021. 9. 14.(화)
진 * 진	해피로 (인천논현점)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81, 403호 (논현동)			
변 * 연	BLUE PC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16, 401호 (구월동)			
이 * 환	세븐 PC	인천 남동구 경인로 595, 1층 4호 (간석동)			

6.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7. 유의사항

- ①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제출기한 : 2021. 9. 13.(월) 18:00까지
- 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유통팀 (☎032-453-6263)

2021년 8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80호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일직근무 형태에 대한 설명을 현 상황과 맞게 수정하고, 당직 대체휴일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상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며, 입법 경제상 실효성이 없는 시행세칙을 삭제

2. 주요내용

- 일직 근무시간 설명 현행화(안 제4조제2항)
-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장(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 10일)(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453-2185, FAX 453-21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일직근무 형태에 대한 설명을 현 상황과 맞게 문구 수정
-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장을 통하여 대체휴무 사용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

☐ 주요내용

- 일직 근무시간 설명 현행화(안 제4조제2항)
-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장(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 10일)(안 제5조제1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을 “정상근무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② ----- -- --- <u>정상근무일</u> -----
③ (생략)	----- -----.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

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 2. 1, 일부개정 2018. 9. 1.)

② ~ ④ 생략

제3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 - - - -

1 0 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81호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범위 : 안 제2조
- 조직 및 운영 : 안 제3조
- 전담공무원의 임용 : 안 제4조
- 수당 등 :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 453-5992 FAX 453-58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무범위 : 안 제2조
- 조직 및 운영 : 안 제3조
- 전담공무원의 임용 : 안 제4조
- 수당 등 :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2021. 3.2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1. 4.20. 의견조회)
- 여성가족부 권고 참고 조례안(2021. 6. 4.)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범위, 조직 및 운영,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범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위기청소년 현황 조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무
3.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에 관한 사무
4.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무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전담기구를 청소년 담당 부서의 팀 조직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구에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공무원은 전담기구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전담기구의 명칭은 “청소년안전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전담기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구청장은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에게 법령 및 예산에 근거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7조의3(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 2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구의 경우는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전담기구의 장과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구의 경우는 8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실무담당자를 둔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상담복지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자
3.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범위, 조직 및 운영,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범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위기청소년 현황 조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 운영
5. 그 밖에 시장(또는 도지사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같음)이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구를 국, 실, 단, 과, 팀 등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구에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공무원은 전담기구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전담기구의 명칭은 “00시(또는 도 또는 군 또는 구) 청소년안전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전담기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시장은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에게 법령 및 예산에 근거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82호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 실행위원을 실무위원으로 변경(안 제10조)
-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 453-5992 FAX 453-58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 실행위원을 실무위원으로 변경(안 제10조)
-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변경(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2021. 3.23.)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실행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행위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남동구 <u>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위원회</u> 운영 규칙	--- <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u>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남동구 <u>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위원회</u>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u> ----- -----
제2조(기능) 남동구 <u>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u>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2조(기능) --- <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u> (-- “심의위원회”- --)- ----- ----- -----
제3조(구성) ① <u>운영위원회</u>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u>심의위원회</u> ----- ----- -----
② <u>운영위원회</u> 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u>심의위원회</u> ----- ----- -----
③ <u>운영위원회</u>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③ <u>심의위원회</u> ----- -----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게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따른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

--.

②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

-----.

③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전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실무위원회
-----.

④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

⑤ --- 실무위원회 -----
----- 실무위원장-----
-----.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89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수산동 소로2-360호선, 소로2-3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산동 소로2-360호선, 소로2-361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3),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산동 취락지구 ~ 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소로2-360호선: L=566m, B=8m, A=5,417.7㎡

○ 소로2-361호선: L=183m, B=8m, A=2,406.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용 지 조 서

수산동 소로2-360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남촌동	42	전	1,184	19.0	김*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49 풍림아파트****-****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동)	근저당권	
2	남촌동	392-2	답	173	82.3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535번길 ****-****(남촌동)				
3	남촌동	393-2	전	102	30.2	정*인	***				
4	남촌동	394-12	전	988	200.4	이*홍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조합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	지상권	
5	남촌동	394-3	전	988	66.3	이*홍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조합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	근저당권, 지상권	
6	남촌동	23-1	도	35	13.0	***법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7	남촌동	395-2	전	2,512	29.7	서*자	연수구 동춘동 924 현대2차아파트 ***동***호	***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지상권	
8	남촌동	23	창	847	12.8	***법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근저당권	
9	남촌동	395-5	전	241	0.3	김*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				
10	남촌동	598-62	도	5,385	333.6	국	건설부				
11	남촌동	22-2	전	390	76.1	장*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15번길 21, ***동***호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동)	근저당권	
12	남촌동	12-2	전	716	31.7	강*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 8, ***동***호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13	남촌동	13-2	대	228	23.8	신*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14	남촌동	22-1	전	1,306	141.1	장*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15번길21,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근저당권	

제1631호

남동구 구보

2021. 8. 26. 목요일

							동호		***(**동)		
15	남촌동	13-3	도	23	16.9	신*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16	남촌동	22-4	전	1,093	416.8	박*원	인천 남동구 남촌동 ***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동)	근저당권	
17	남촌동	21	전	494	145.9	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24,***동***호				
18	남촌동	28-3	도	15,196	1,633.6	국	건설부				
19	남촌동	20-1	전	1,071	236.2	정*성	간석동***-***				
20	남촌동	28-7	전	5,472	494.0	정*창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시아파트 ***-***				
21	남촌동	28-4	임	3,033	232.9	정*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5 효성상아맨션 ***동 ***호				
22	남촌동	29-3	도	819	87.4	국	건설부				
23	남촌동	598-68	도	81	7.3	국	건설부				
24	수산동	597-48	도	108	6.3	국	건설부				
25	수산동	262-7	도	4,847	558.8	국	건설부				
26	수산동	597-49	도	181	24.7	국	건설부				
27	수산동	276-1	전	542	34.9	한*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53번길 ***, ***호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28	수산동	276-3	도	3,873	362.4	국	건설부				
29	수산동	597-10 7	도	951	23.5	국	건설부				
30	수산동	325-1	도	631	75.8	국	건설부				
합 계					53,510.0	5,417.7					

남동구 구보 용 지 조 서

수산동 소로2-361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수산동	597-107	도	951	139.6	국	건설부				
2	수산동	319-1	도	6,021	1,802.7	국	건설부				
3	수산동	319-2	전	1,362	2.4	신*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79번길 30, ***동***호	남인천** *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동)	근저당 권	
						엄*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79번길30, ***동***호				
						엄*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79번길30, ***동***호				
4	수산동	315-7	도	2,487	95.3	국	건설부				
5	수산동	315-11	도	144	16.7	국	건설부				
6	수산동	598-5	구	2,553	50.8	국	농림축산식품부				미등기
7	수산동	600-22	도	24	17.2	국	건설부				
8	수산동	345-5	도	268	165.7	국	건설부				
9	수산동	345-2	전	662	52.1	김*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28, ***동***호				
10	수산동	345-8	전	63	63.0	차*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주	****-***				
11	수산동	600-21	도	102	1.3	국	건설부				
합 계				14,637.0	2,406.8						

지 장 물 총 괄 집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전체면적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촌동	392-2답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66.14	14.9	m2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2	남촌동	392-2답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4.73	7.97	m2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3	남촌동	394-12전	가건물	철근	1.34	1.34	m2	이*홍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	
4	남촌동	394-12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320.05	35.86	m2	이*홍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	
5	남촌동	394-12전	가건물	가건물	4.55	4.55	m2	이*홍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	
6	남촌동	394-12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46.48	115.78	m2	이*홍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	
7	남촌동	23창	헨스		38.12	22.5	m	*** 조합법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8	남촌동	395-2전	헨스		6.1	6.1	m	서*자	연수구 동춘동 924 ***	
9	남촌동	395-2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83.13	5.64	m2	서*자	연수구 동춘동 924 ***	
10	남촌동	22-1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235.77	113.62	m2	장*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	
11	남촌동	12-2전	헨스		28.38	0.2	m	강*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라미로 ***	
12	남촌동	22-4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55	49.68	m2	박*원	인천 남동구 남촌동13	
13	남촌동	21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61.76	59.28	m2	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제1631호

남동구 구보

2021. 8. 26. 목요일

14	남촌동	20-1전	가건물	철근콘크리트	12.05	0.001	m2	정*성	간석동 ***	
15	남촌동	20-1전	가건물	합판	2.84	2.84	m2	정*성	간석동 ***	
16	남촌동	28-7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332.72	15.12	m2	정*창	서울 양천구 목동 ***	
17	남촌동	28-7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331.66	11.15	m2	정*창	서울 양천구 목동 ***	
18	남촌동	28-7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331.15	4.27	m2	정*창	서울 양천구 목동 ***	
19	남촌동	28-7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442.74	180.12	m2	정*창	서울 양천구 목동 ***	
20	남촌동	28-7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452.52	42.37	m2	정*창	서울 양천구 목동 ***	
21	남촌동	28-3도	비닐하우스		37.56	25.62	m2	국	건설부	
22	남촌동	28-3도	가건물	합판	42.59	29.04	m2	국	건설부	
23	남촌동	28-3도	창고	비닐하우스	11.42	6.02	m2	국	건설부	
24	남촌동	28-3도	헨스		28.67	13.6	m2	국	건설부	
25	수산동	262-7도	헨스		-	40.45	m2	국	건설부	
26	수산동	262-7도	창고	비닐하우스	97.63	3.47	m2	국	건설부	
27	수산동	262-7도	창고	비닐하우스	22.62	0.04	m2	국	건설부	
28	수산동	325-1도	가건물	철근	24.53	0.72	m2	국	건설부	
29	수산동	345-5도	가건물	합판	7.36	4.1	m2	국	건설부	
30	수산동	345-2전	헨스		67.52	28.7	m2	김*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	
31	수산동	345-2전	창고	비닐하우스	30.26	0.79	m2	김*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	

한 전 주 조 서

번호	구분	지번	지목	한전주번호	수량	소유자	비고
1	한전주	392-1	도	8818A042 배발간25H1R39H1	1	한국전력	
2	한전주	598-62	도	8818A152 배발간R39H1L2	1	한국전력	보안등1
3	한전주	598-62	도	8818A262 배발간25H1R39H1L3	1	한국전력	
4	한전주	345-2	전	8818B461 도림지57L7R6L2	1	한국전력	

통 신 주 조 서

번호	구분	지번	지목	통신주번호	수량	소유자	비고
1	통신주	392-1	도	번호망실	1	KT	
2	통신주	394-12	전	번호망실	1	KT	
3	통신주	394-12	전	번호망실	1	KT	
4	통신주	598-62	도	번호망실	1	KT	
5	통신주	`22-4	전	번호망실	1	KT	
6	통신주	276-3	도	`11-11-2	1	KT	
7	통신주	319-1	도	번호망실	1	KT	
8	통신주	319-1	도	번호망실	1	KT	보안등#2
9	통신주	391-1	도	번호망실	1	KT	보안등#3

10	통신주	319-1	도	번호망실	1	KT	
11	통신주	315-7	도	번호망실	1	KT	보안등#4
12	통신주	345-5	도	번호망실	1	KT	보안등#5
13	통신주	345-5	도	번호망실	1	KT	보안등#6
14	통신주	345-5	도	번호망실	1	KT	

보안등조서

번호	구분	지번	지목	보안등번호	수량	소유자	비고
1	보안등	598-62	도	301	1	남촌동	한전주1
2	보안등	319-1	도	210	1	수산동	통신주6
3	보안등	319-1	도	211	1	수산동	통신주7
4	보안등	319-1	도	97	1	수산동	통신주8
5	보안등	315-7	도	162	1	수산동	통신주10
6	보안등	345-5	도	212	1	수산동	통신주11

CCTV조서

번호	구분	지번	지목	CCTV번호	수량	소유자	비고
1	보안등	345-5	도	693	1	남촌동	

수목조서

번호	구분	지번	위치	방향	수량(주)	소유자	비고
----	----	----	----	----	-------	-----	----

제1631호

남동구 구보

2021. 8. 26. 목요일

			(STA)				
1	수목	392-1도	0+000	좌우	3	건설부	
2	수목	42전	0+006.82	우	6	김*길	
3	수목	20-1전	0+210.33	우	3	정*성	
4	수목	20-1전	0+225.66	우	5	정*성	
5	수목	28-3도	0+218.90	우	3	건설부	
6	수목	28-3도	0+228.27	우	11	건설부	
7	수목	28-3도	0+295.61	우	21	건설부	
8	수목	29-3도	0+386	우	10	건설부	주민 사용중
9	수목	28-3도	0+421	우	7	건설부	주민 사용중
10	수목	262-7도	0+474	우	11	건설부	주민 사용중
11	수목	319-1도	0+026	우	21	건설부	2구간
12	수목	345-2전	0+162	우	7	김*모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91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변경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맹목적인 신고를 제한하고자 함
-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연 1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신고의 제한을 도모함
- 포상금 지급시기를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납부기한 종료일 이후 7일 이내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56 FAX 453-2559

4. 참고사항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1. 의결주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한도를 변경하여 단순히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신고를 제한하고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내포한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연 1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신고의 제한을 도모함(안 제9조)
- 나. 종전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한도를 변경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맹목적인 신고를 제한하고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내포한 포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연 1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신고의 제한을 도모함(안 제9조)
- 종전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규칙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1인에” 를 “1명에게” 로, “월” 을 “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 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를 “부과일로부터 납
부기한 종료일 이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제3조(1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무단투기 신고자 <u>1인에</u> 지급 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월 100 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 니한다.	3. ----- <u>1명에게</u> --- ----- 연 ---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7일이내로 한다.

② -----
-- 부과일로부터 납부기한 종료일 이후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며,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로 하며,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2.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93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 <21수용0198>」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6. 10.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명: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
3. 공고기간 : 2021. 8. 26. ~ 2021. 9. 10.(15일)
4. 재결서 수령장소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사전 유선연락 요망)
5.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1	김○규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	공시송달 대상
2	안○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928번길 ○	
3	이○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76번길 ○	
4	이○영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	
5	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	
6	조○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2-453-6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96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 기 준 일 : 2021. 7. 1.기준
- . 대 상 : 286필지(2021.1.1. ~ 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
- . 기 간 : 2021년 9월 1일 ~ 9월 23일
- .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조회 가능
-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 기 간 : 2021년 9월 1일 ~ 9월 23일
-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3-6152, 6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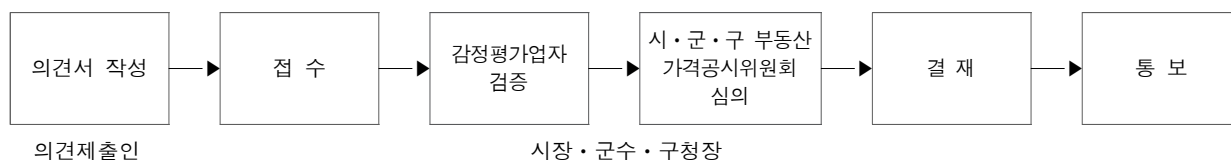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원 / m²	의견가격 원 / m²
	의견제출사유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m ²			KRW/ m ²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8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08.23.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08.23. ~ 2021.09.06.(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03 -0199516	좋은호(好)바	김*	담방로48번길 8 (만수동, 유영빌딩4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8.24.	2021.08.23.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8월 23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8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의거 청문 실시 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거 청문 실시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1. 8. 23. ~ 2021. 9. 06.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비고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3-0199923	휘프레스스 (4precious)	윤**	백범로 124번길 126, 402동 1006호(만수동)	거주지 불명
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4-0199365	네이처스바이오	김**	담방로 22-1, 지하1층 5호 (만수동, 삼익아파트상가내)	폐문 부재
3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6-0199432	유사나헬스 사이언스(유)	김**	소래역남로 40, A동 605호 (논현동, 에코메트로3차 더타워)	기타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2)
- 청문일시 : 2021. 9. 17.(금)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남동구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8.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 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의거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2-453-2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84호

식품위생법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08월 25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 제 목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제13조 제1항 위반 교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21. 08. 25. ~ 2021. 09. 08.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적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적용
- 당사자 및 과태료처분 예정사항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일반음식점	의성5일장	이ㅇ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 4, 1층 (간석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내납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어부김부장	김ㅇ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3, 103호 (구월동, 노빌리안명품)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내납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복새통	전ㅇ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6번길 34, 111호 (논현동, 주건축물제1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내납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더작은술집	전ㅇ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년	과태료20만원

업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논현로46번길 14, 1층 120호 (논현동)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새벽닭옛날통 닭간식점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106, B01호 (간석동, 청산빌라)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카페머그	안○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6, 링크126. 6층 606호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크래프트한스	강○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91, 1층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곰창선수	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춘공원로23번길 10-6, 은성프라자(상업7-1-2) 1층 103호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엠알에스(MR S)	김○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춘공원로23번길 10-21, 누리자타운 1층 124, 125호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춘향이와이도 령	허○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76번길 17, 1층 일부호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바다품은회무 침	김○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12번길 13, 1층전부 (도림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도시밥상	최○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56번길 14, 1층 일부호 (만수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일반음식점	불고기랑콩나 물이랑	김○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춘공원로55번길 6, 1층 일부호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건강기능식품	문구방	원○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61, 2층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건강기능식품	해당생활과학	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76번길 56, 2층 201호일부호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건강기능식품	빈이맘	승○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22, 316동 1004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3단지)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건강기능식품	루비셀러물	성○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25번길 5, 1층 일부호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건강기능식품	인사이트	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99, 아트폴리스 4층 405호 (간석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건강기능식품	케이글로벌	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48, 세화빌딩 2층 (구월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납부부시 16만원)

업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건강기능식품	홈헬스케어	박o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2, 세아빌딩 1층 일부호 (간석동)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기한내납부시 16만원)

5.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2021.09.08.까지 남동구 보건소 식품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032-453-262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4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11번길 9 (도림동) 외 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17번길 32 (간석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5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11번길 9 (도림동)	2011.3.24.	도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8.19.	건물 등의 주된 도로로11번길 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9-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70번길 16 (논현동)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8.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270번길 1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을 건물번호로 부여	한국씨엔씨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68 (논현동)	2009.11.16.	남동대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1.8.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 26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68을 건물번호로 부여	부영일렉트로닉스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73-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55-28 (구월동)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8.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4번길 55-2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5-28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17번길 32 (간석동)	2021.8.19.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4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송이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송이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건축과 ☎032-453-2774,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2-1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송이주차장 신축공사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 대지면적: 885.7㎡
 - 사업면적: 708.0㎡(주차대수: 21대)

○ 변경

- 대지면적: 885.7㎡
- 사업면적: 716.7㎡(주차대수: 18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송석만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15(서창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1.05.26. ~ 2022.06.30.
- 변경: 2021.05.26.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이름	주소	
1	논현동	592-11	차	885.7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